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872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임종국, 김소양, 권수정,

최 선, 이동현, 김정태, 우형찬, 김상훈, 김소영, 권영희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○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, 민·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,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(제9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	<신 설>	제9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
		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
		<u>31일까지로 한다.</u>